##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76

발의연월일: 2024. 12. 26.

발 의 자:정성국·김용태·김예지

서천호・최보윤・진종오

유재옥 • 배준영 • 백종헌

유용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은 지식 전달과 학생 생활지도라는 업무의 특성상 높은 전문성과 자기 개발이 요구됨. 이에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을 위하여 자율연수휴직제도가 도입되었음.

한편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반직공무원은 재직기간 3년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 6년마다 사용할 수 있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함.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직무의 동질성이 있고, 복무 등에 관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원의 보호와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서 사립학교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 요건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자율연수 휴직제의 휴직요건을 재직기간 3년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복직후 6년이상 근무시 다시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과 일반직공무원간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9조).

법률 제 호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2호 중 "10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 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12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 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	
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	
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	
야 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12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	
간이 <u>10년</u> 이상인 교원이 자	<u>3년</u>
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제1항제12호에 따른 휴직
	(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
	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